

## 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실용신안 심사 순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심사관이 전문기관에 선행기술조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려는 것임.

## 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##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특허청장은 심사관 중에서 심사장을 지정할 수 있고, 심사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 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

## 부 칙

이 규칙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9조(심사의 순위)	① · ② (생략)	제9조(심사의 순위)	① · ② (현행과 같음)	
	<신 설>			③ <u>특허청장은 심사관 중에서 심사장을 지정할 수 있고, 심사관이 제2항제2호에 따른 심사순위에 따라 심사하려는 경우에는 심사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.</u>